

2025 년도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의 안내

나고야시립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 등에 취학하고 있는 장애 아동 학생은 세대소득에 따라 학용품비나 학교 급식비 등을 지급하는「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 특별지원학급의 아동 학생
- 2 통급지도교실의 아동 학생 (3에 해당되는 자 이외의 아동 학생. 교통비(통학비)만 지급합니다.)
※현립 특별지원학교의 통급(通級)도 대상이 됩니다.
- 3 보통 학급(통급지도교실을 포함)의 아동 학생 중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에 규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조대상의 경비

구 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① 학 교 급 식 비	실 비 액 × 1 / 2	실 비 액 × 1 / 2
② 교 통 비 (통 학 비)	실 비 액 (주 1)	실 비 액 (주 1)
③ 교 류 학 습 교 통 비	실 비 액 (주 1)	실 비 액 (주 1)
④ 수 학 여 행 비	실비액×1/2 (최대 10,790 엔)	실비액×1/2 (최대 28,860 엔)
⑤ 교외활동비 (숙박 있음)	실비액×1/2 (최대 5,199 엔)	실비액×1/2 (최대 5,376 엔)
⑥ 교외활동비 (숙박 없음)	실비액×1/2 (최대 800 엔)	실비액×1/2 (최대 1,155 엔)
⑦ 학용품·통학용품 구입비	5,820 엔 (주 2)	11,370 엔 (주 2)
⑧ 신입학 아동 학생 학용품 · 통학용품 구입비 (1 학년만)	28,530 엔 (주 2)	31,500 엔 (주 2)
⑨ 온라인학습 통신비 (인정 I 단계만)	실 비 액 × 1 / 2 (주 3) (최대 7,000 엔)	실 비 액 × 1 / 2 (주 3) (최대 7,000 엔)

(주 1) ② ③은 인정단계가 제Ⅲ단계인 경우는,「실비액×1 / 2」로 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보통 경로와 방법으로 원칙상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고 통학하는 경우의 교통비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주 2) ⑦ ⑧은 2024 년도부터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수증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주 3)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실시하여, 통신비, 통신기기 구입비 · 렌탈료 부담이 생긴 세대가 대상입니다. 통신기기 구입비 · 렌탈료 지급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정단계의 산정기준과 보조경비

세대의 소득액과 생활보호기준 수요액 비율에 의해 인정단계를 결정하며, 그 인정단계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정단계는 연도별로 결정합니다.

인정단계	산정기준	보조대상의 경비
I	소득액이 수요액의 1.5 배 미만	①~⑨
II	소득액이 수요액의 1.5 배 이상 2.5 배 미만	①~⑧
III	소득액이 수요액의 2.5 배 이상	②, ③

제 I · II 단계의 기준 (생활보호기준 수요액의 2.5 배 미만의 소득액)

대략 다음과 같은 소득액입니다. 세대인수가 같아도 연령 구성 등에 따라 소득액이 다릅니다.

세대인수	2 인세대	3 인세대	4 인세대	5 인세대	6 인세대
세대 소득액	600 만엔	700 만엔	790 만엔	840 만엔	930 만엔
(급여소득자의 연봉)	(790 만엔)	(900 만엔)	(1000 만엔)	(1050 만엔)	(1140 만엔)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제도와는 별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신 분께 급식비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취학원조」제도가 있습니다. 취학원조가 지원을 더 많이 받으므로, 취학원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취학원조의 신청을 권장합니다. 취학원조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③ 교류학습 교통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취학원조에서 지급됩니다.

보통 학급(통급지도교실을 포함)의 아동 학생 중,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에 규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앞면에 있는 대상자 3) 의 판정기준 등

구분	장애 정도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의 규정에 의한 기준)	판정 방법	필요서류
시각 장애인	양쪽의 교정시력이 대략 0.3 미만인 자 또는 시력 이외의 시력 기능장애가 높은 자 중,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보통 글자, 도형 등 시각에 의한 인식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인 자 ※보통 글자, 도형 등 시각 인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모든 교과 등 지도에 있어서 특별지원과 배려를 필요로 하며, 또한 장애를 개선·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지도가 계통적·계속적으로 필요로 함	신체장애자 수 첩 등급이 2 급 이상인 자 또는 신체장애 자 수첩 등급 이 3~6 급인 자 중 왼쪽 기 준에 해당함을 의사가 진단한 자	① 신체장애자 수첩의 사본 ② 의사의 진단 서(나고야시 지 정 양식에 의한 것) (②는 신체장애 자 수첩 등급이 3~6 급인 자 만 필요)
청각 장애인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대략 60 데시벨 이상인 자 중, 보청기나 인공 귀 등을 사용해도 보통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인 자	애호(愛護)수첩 의 치료교육 판정이 A 인자	애호수첩 사본
지적 장애인	1 지적발달 지체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며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원조를 필요하는 정도인 자 2 지적발달 지체 수준이 1 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자 중, 사회 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애호(愛護)수첩 의 치료교육 판정이 A 인자	애호수첩 사본
지체 장애인	1 지체부자유 상태가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보행, 필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1 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수준인 자 2 지체부자유 상태가 1 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자 중, 항상 의학적 관찰지도*2 를 필요하는 정도인 자 ※1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이란, 보행(휠체어에 의한 이동은 포함하지 않음), 필기, 식사, 의복 갈아입기, 배설 등의 동작이나 그림그리기 등의 학습활동 등의 것 ※2 항상 의학적 관찰지도란, 특정기간 내에 항상 의학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기상부터 취침까지의 일상생활의 하나 하나의 운동·동작에 대하여 지도·훈련을 받는 것	신체장애자 수 첩의 등급이 2 급 이상인 자 또는 신체장애 자 수첩등급이 3~6 급인 자 중 왼쪽기준에 해당함을 의사 가 진단한 자	① 신체장애자 수첩의 사본 ②의사의 진단 서 (나고야시 지정양식에 의한 것) (②는 신체장애 자 수첩 등급이 3~6 급인 자만 필요)
병약인	1 만성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신생물 그 외의 질환 상태가 계속되어 의료*1 또는 생활규제*2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자 2 신체허약 상태가 계속되어 생활규제*2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자 ※ 1 의사를 중심으로 한 진단이나 치료. 일상적인 약 복용이나 자기주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2 질환에 따라 운동이나 일상의 여러 활동(보행,목욕,독서 학습 등) 및 식사의 질이나 양이 현저하게 제한된 자	왼쪽 기준에 해당함을 의사 가 진단한 자	의사의 진단서 (나고야시 지정 양식에 의한 것)

※ 복수장애가 있는 아동 학생에 대해서는, 장애가 더 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

- ★ 특별지원학급과 통급지도교실의 아동 학생에 대해서는 6 월 초에 신청 안내를 합니다.
- ★ 그 밖의 아동 학생에 대해서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학교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서 필요서류를 받고,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서 진단서 작성을 의뢰해 주십시오.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학처 학교 또는 나고야시 교육위원회 학사과(TEL 972-3217)로